

대한민국 법학과 법조의 디딤돌

우리나라 법학과 법조를 상징하는 月刊『考試界』는 그 자체가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법조인이나 법학도의 뇌리에 추억처럼 깊이 새겨져 있다. 그동안 수많은 풍상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학과 법조의 상징어로 자리매김되어 온 月刊『考試界』의 창간 62돌을 맞이하면서,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쉬임없이 오로지 한 우물을 파면서 이 땅의 법학교육발전과 법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는 참으로 경이로운 족적이다.

月刊『考試界』는 법학, 국가시험, 법조를 향하는 청년과 동고동락하며 법률가나 공무원의 꿈을 실현시키며 기적에 기적을 더하여 신화를 만들었다. 성공한 법률가에게는 반듯한 법률가상을 심어주는 스승의 역할을 다하고, 실패한 청년에게는 희망의 등대이자, 절망과 좌절을 치유하며 재기를 위한 힘겨운 길의 동행자이었다.

月刊『考試界』는 한결같이 법학교육현장을 지키며 수험법학을 향도하였다. 법적 쟁점의 해석과 입법 및 관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수험생 및 법학연구자의 학습에 절대적 도움을 주었고, 특히 고된수험생활에 지친 자에게 합격의 희망을 심어 준 ‘합격기’는 언제나 찼한 드

라마 그 자체였다. 그야말로 법학도에게 명쾌한 법이론의 정리와 사례해결방법을 제공하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디딤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62년을 쉬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 왔으니, 그러한 집념어린 헌신의 과정이 곧 법치 대한민국의 기반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사법시험에 대체하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수험시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시험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선발, 국가가 아닌 민간에게 법조인 양성을 이양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수험법학관련 출판시장도 요동쳤다. 그러한 출렁거림 속에서도 고시계는 낙락장송의 고고함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켜 왔다. 마치 법학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버텼다.

최근 지난 7회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초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87%정도 되어서 별 탈이 없는 듯 보였으나, 로스쿨 수료 후 5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가 갈수록 합격률은 낮아져서 올해 합격률은 48%에 불과하니 걱정이 다. 또한 대학별 합격자비율이 최대 3배 이상의 편차가 난 사실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용 상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한국안보통일연구원 부원장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인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이 너무도 커서 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10년 만에 중환자실로 가야할 환자취급을 받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그 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그 이전 제도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던 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설계나 기획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자칫 그들 중심의 새로운 독과점형태의 기득권층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제도의 본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는 정의와 형평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넷째,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착근·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생존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소나 말은 초지에, 은어나 송사리는 물에 풀어야 한다. 배를 산으로 끌면 안 되며, 자동차를 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로스쿨은 그 제도적 본질이 법조인을 대량 생산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로스쿨은 근본적

으로 자율과 경쟁체제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타율과 과도한 통제·규제하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과거의 사법시험인원을 통제하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총정원도, 대학별정원도, 로스쿨선정도, 그 모든 것을 정부가 쥐고 흔드는 바람에, 내용은 사법시험인데도 간판만 로스쿨을 단 기형의 로스쿨이 탄생하면서부터 불행은 예고된 것이었다. 로스쿨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기형의 제도로 운영한 정부의 무지에 있다. 원래의 제도의 이념이나 목적·본질에 맞게 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에 맡겨야 한다. 인가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의 적정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 로스쿨 진입도, 교과과정도,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자율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오직 자율경쟁을 잘 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만 하면 된다. 자율에 맡기고 경쟁에 방목해야 한다. 그래야 그 시장에서 선수(?)가 태어나는 것이다. 선수층이 두터워야 신기록이 나지 한 두 명이 경쟁없이 훈련하여 기록갱신이 가능할까?

법조인 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더 이상 재단하는 것은 안 된다. 법조인의 활동영역을 송무분야에 안주시킬 것이 아니라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안으로는 우선 유사법조직역과의 통합을 위한 광의의 법률가일원화를 통해 관련 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길이 로스쿨로 통하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행정고시나 국립외교관시험조차도 로스쿨로 통합하여 전방위적 팽창정책으로 나아가야 로스쿨이 제대로 된 로스쿨다운 로스쿨로 세워지고, 법조도 살고 나라의 법치주의도 살고,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이후 법학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사라졌고,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도 약해졌고, 법학교육인구도 급감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법교육과목 자체가 없어졌다. 각종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이 없어졌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반듯한 로스쿨,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정책처럼 법조직역의 대확장, 시민의 법의식 향상, 사법개혁을 통한 시민의 사법신뢰회복,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의 고양 등을 통하여 법치대한민국의 융성한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 올바른 로스쿨이 그 답이다. 月刊『考試界』가 제대로 된 로스쿨을 위한 길을 열어 주기를 바란다.

현재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분위기가 팽배한 때에,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제대로 된 개혁이 있어야 만이 올곧은 민주주의,

심군은 법치주의가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을 세워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달성한 근거가 되는 한국법을 개도국·신흥공업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月刊『考試界』가 한국법학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가져온 주인공이라면, 위와 같은 법학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향도역할을 해야할 책무가 있다. 月刊『考試界』가 법학과 법조의 사회적 저평가의 흐름을 막고, 지난 6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법학을 세워 온 등불의 역할을 해 온 것처럼, 법학도·예비법조인·법률실무자·법학자·법치시민 모두가 소통하며 법치통합의 장으로 우뚝 서도록 인도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月刊『考試界』가 중환자실의 로스쿨을 치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月刊『考試界』가 법률계의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을 접고, 융합과 복합, 연합과 화합을 통한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의 길을 열며, 고시계가 제대로 된 로스쿨, 반듯한 법과대학, 그리고 국민의 사랑받는 법조가 되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여 月刊『考試界』의 법률계의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법개혁도 성공하고, 법학교육도 법조인 양성도 성공하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만행 역할을 해야 한다. 月刊『考試界』가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지키고, 법조인양성의 반듯한 길도 제시하고, 이 땅의 법치주의와 법문화 창달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며, 창간 62 주년을 맞이하는 月刊『考試界』에 더 큰 번영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